

## 이달의 칼럼



이 창 현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변호사(형사법)
- 주요 저서
  - 형사소송법(제8판)
  - 사례 형사소송법(제5판)
  -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공저)
  - 형법판례 150선(공저)

## 피고인의 구속기간

투자 피해액 1조 6000억 원대 ‘라임펀드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보석 허가로 석방되었다가 결심공판을 앞두고 위치추적기까지 끊어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고인은 구속기소가 되었다가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10개월이나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보석 허가가 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는 동안 계속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구속기소가 되고 추가 구속영장에도 불구하고 1년이란 구속기간 만료로 줄줄이 석방되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구속기간도 제한이 있어서 1심에서의 구속기간은 2차의 갱신을 통해 공소제기시부터 최장 6개월이다. 불구속재판 원칙에 따라 부당한 장기구속을 방지하고,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을 석방한 상태로 재판하라는 입법취지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해야 한다는 집중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보다 더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법원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중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피고인들을 구속만기에 쫓겨 석방하기만 하면 해결이 되고, 이것이 불가피하다고 그냥 넘어갈 일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기소 후에 6개월이 될 무렵에 추가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자 재판을 더욱 불신하면서 그때부터 재판을 완전히 거부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간절한 석방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사실상 편법으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것도 큰 문제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구속기간 내에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까 하는 답답함과 함께 피고인 측이 교묘하게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하게 된다.

최근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 씨가 석방되었다가 급기야 자살 시도까지 하였으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소장에 거명된 장차관급 여러 인사, 전현직 국

회의원들과 사채업자들까지 전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에 따라 수사 장기화에 이어 재판 장기화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있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예외가 인정되고 있듯이 피고인의 구속기간도 법정형이 중하고 다수의 공범이 있는 경우나 사건이 매우 복잡하여 증거조사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서 법원이 추가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속기소가 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이 다시 구속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으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반 국민들까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하는 한심한 상황은 제발 피해야 하지 않을까.

(출처/법률신문)